7.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2일

○ 발 의 자 : 이시복 의원, 강민구 의원, 김원규 의원, 김재우 의원,

박우근 의원, 윤영애 의원, 이태손 의원, 장상수 의원,

정천락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8일

○ 상정일자 :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10월 17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이시복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³¹⁾사업을 추진하고,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³²⁾ 및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이 전부개정('12.2.1.)됨에 따라.

^{31) &#}x27;공공보건의료'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·계층·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·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^{32) &#}x27;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'이란 공공보건의료기관,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, 공공전문진료센터, 보건 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뜻하며, 여기서 '공공보건의료기관'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보건기관, 의료기관, 약국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.

-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공공보건의료지원단>을 설치하려는 것으로,
-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까지 17개 시·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설치·운영을 목표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, 올해 9월 대구를 포함한 5개 시·도에 국비가 가내시³³⁾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 단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·운영을 명시(안 제1조~ 제2조)
-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단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시행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○ **안 제2조**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·시행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·운영에 대해 명시하고.

³³⁾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-4229호(2019.9.18.) : 대구, 광주, 울산, 대전, 경북 각 1.5억원 가내시

- 안 제3조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한 지원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·연구 등 지원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
- **안 제4조**는 지원단장과 지원단의 인력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,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우수한 전문인력 채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.
- **안 제5조**는 지원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그에 따른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**안 제6조**는 지원단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함.
- **안 제7조**는 지원단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·시행 관련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
- **안 제8조**는 시장이 지원단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지도· 감독할 수 있으며, **안 제9조**는 수탁기관이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○ 지역격차 없는 필수의료의 전 국민 보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'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'(2018. 10월)을 세우고 2022년까지 17개 전체 광역시·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·운영을 목표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.

- ○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지원단에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이나 공공보건의료 정책적・기술적 전문지원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이 강화되고, 지역 보건의료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지자체에 적합한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,
- 향후 지원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,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타 시·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 시민의 필수의료 보장과 건강 격차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과 타 시도의 운영 우수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?	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고, 여러 개별 지원단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. 타 시도 사례로는 서울의 경우 건강도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, 지역별로 현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대구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대구의료원에서 이에 대한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으나, 대구의료원에서 지원단을 운영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	대구의료원에서는 현재 의료진 여건상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,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국립대병원을 권고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○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